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29호

2026. 7. 3.(금)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차 례

공 고

- 제2026-114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제2026-115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 제2026-117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9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4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 이유

최근 국제정세 변화 및 유가 상승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근거 확대(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3497 / FAX : 02-2116-4620

- E-mail : wooli1215@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변화 및 유가 상승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근거 확대(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천재지변·재해”를 “천재지변·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
화”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비상 시”를 “비상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② (생략)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u>천재지변·재해</u>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자계획 공고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 긴급 용자를 할 수 있다.	③ ----- <u>천재지변·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재난 피해 용자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발생 등 <u>비상시</u>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용자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재난 피해 용자지원) ① ----- ----- ----- ----- ----- <u>비상시</u>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5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변화 및 유가 상승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근거 확대(안 제10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3497 / FAX : 02-2116-4620

- E-mail : wooli1215@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변화 및 유가 상승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근거 확대(안 제10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
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긴급 용자대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말한다. 1.·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10조(긴급 용자대상) ----- ----- ----- -----. 1.·2. (현행과 같음) <u>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u> 4. (현행 제3호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7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폐지이유

행복나눔목욕탕 안전점검 시행 결과 기계설비 노후화 및 구조적 안전 문제로 운영이 종료(2025.12.31.)되었고,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 해지(2026.04.01.) 및 철거 공사가 완료됨(2026.04.22.)에 따라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생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3615 / FAX : 02-2116-4627

- E-mail : tjwjdtjs0823@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행복나눔목욕탕 안전점검 시행 결과 기계설비 노후화 및 구조적 안전 문제로 운영이 종료(2025.12.31.)되었고,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 해지(2026.04.01.) 및 철거 공사가 완료됨(2026.04.22.)에 따라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별첨

나. 예산조치 : 예산 감추경 편성 추진 예정(약 170,000천원)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대상아님
- 2) 성별영향평가 : 대상아님
-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 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6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7.18.>

1. "목욕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개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8.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9.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호자"란 심한장애 등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자원봉사자"란 타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미취학 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14.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목욕시설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3(중계동 514-3) 시영3단지 목련아파트 임대상가 B 제30호에 설치한다.

② 목욕시설 명칭은 “노원행복나눔목욕탕”으로 한다.<개정 2015.1.8.>

제4조(운영) ① 목욕시설의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목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공익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목욕시설의 개방) ① 목욕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목욕시설 개방시간은 05시30분에서 20시까지로 하되, 수탁자가 개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목욕시설의 보수 및 정비
3. 목욕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① 목욕시설 이용료 및 할인·감면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18.>

1. 등록장애인
2. 경로우대자
3. 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
4.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6. 심한장애 등록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7.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8. 미취학 아동
9. 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봉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10.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자원봉사자는 수탁자에게 자원봉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이·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⑥ 수탁자는 목욕 비품 및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다.
- ⑦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시설 이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일반이용자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7.18.>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 2. 위탁 기간
 -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의견제출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	--

주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